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 정 희 의원)

의안 번호	23-116
----------	--------

발의년월일: 2023. 10. .

발의자: 장정희, 권영숙, 권인순,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오욱자,
차해영, 최은하, 한선미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이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마포구민이 다함께 협력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선언하고,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여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 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는 구민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
-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로 규정하면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의 중복수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다.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을 명시함 (안 제7조)
- 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관계법령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9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3. 8. 21. ~ 8. 28.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7.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8.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에 제2

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9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중 “의료기관”을 “교육기관,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4조 (생 략)</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u>수립·시행할 수 있다.</u></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7. (생 략)</p> <p>③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u>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 ----- ----- ---- <u>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성년후견제 이용 지원</u></p> <p>8. <u>실종예방에 관한 사항</u></p> <p>9.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p>

④ (생략)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2. (생략)

<신설>

3. ~ 8. (생략)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생략)

② (생략)

제9조·제10조 (생략)

본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

-----.

1. 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사업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5. ~ 10.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제11조 (현행 제9조 및

<p><u>제11조(협력체계 구축)</u>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u>의료기관</u>,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p> <p><u>제12조 (생략)</u></p> <p><u>제13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와 같음)</p> <p><u>제12조(협력체계 구축)</u> ----- ----- ----- ----- <u>교육기관, 의료기관</u>----- -----.</p> <p><u>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u></p> <p><u><삭제></u></p>
---	--

【관 계 법 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강나은
연 락 처	02-3153-8883